

문서번호	예산법무과-10292		주무관	재정심사팀장	예산법무과장	기획조정실장
보고일자	2019. 12. 10.					전결 2019. 12. 10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		전용호	고재경	이종성	민승용
연락처	성명	전용호	협조			
	☎	032-625-2514				

## 부천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

### 요지

부천도시공사 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장의 연봉과 평가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

□ **근거** :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 등

#### □ 평가개요

○ 대상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 (2018년 실적)

○ 대상자 : 2018년 근무 공사 사장

- 임명호 사장 근무기간 : 2017. 12. 26. ~ 2018. 3. 3.

- 김동호 사장 근무기간 : 2018. 3. 5. ~ 현재

○ 분야

- 공통목표 :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2개 분야

- 자체목표 : 공사운영의 활성화 등 4개 분야

□ **평가결과** : S급(평점 90.3점)

《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(계약서 별표 5)》

점수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 ~ 60점 이상	60점 미만
등급	S	A	B	C	D

# - 부천도시공사 사장 -

##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

부천도시공사 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장의 연봉과 평가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

### I 관련근거

-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
- 경영성과계약서 제8조(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)

### II 평가개요

- 평가대상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(2018년 실적)
- 평가대상자 : 2018년 근무 공사 사장
  - 임명호 사장 근무기간 : 2017. 12. 26. ~ 2018. 3. 3.
  - 김동호 사장 근무기간 : 2018. 3. 5. ~ 현재
- 평가자 : 부천시(예산법무과장 등 3명)
- 평가분야
  - 공통목표 :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등 2개 분야
  - 자체목표 : 공사운영의 활성화 등 4개 분야
- 평가방법
  -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
  -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거

### III 평가결과

- 평가결과 : S등급(평점 90.3점)
  - 경영성과 계약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(자체)

점수	90점 이상	90점 미만 ~ 80점 이상	80점 미만 ~ 70점 이상	70점 미만 ~ 60점 이상	60점 미만
등급	S	A	B	C	D

※ 전년도 평가등급 : S등급(평점 92.9점)

## IV 총 평

- 부천도시공사는 『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 공기업』 을 비전으로 460여명의 임·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,
- 전년대비 경영성과 저조 등으로 인해,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(2018년 실적)에서 전년도에 비해 1단계 하락하여 **“나등급”을 받았음**
- 그러나, 공사 전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, 사업다각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고객안전을 위해 시설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,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.

### 잘 된 점

-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『복지택시 카셰어링(Car-sharing)』 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함.
- 주차난 해소를 위한 『숨어있는 주차장 발굴』 및 경로당 방문 보수를 위한 『찾아가는 지팡이 출동 서비스』 등 공사 업무와 연계한 특성화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우수함.
- 공사 보유 전문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최초 교통·통신분 『엔지니어링 사업』 개시,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『신사업 발굴 TF』 운영 등 사업 다각화에 대한 노력과 도전성이 돋보임.
-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(FMS) 구축 및 통합 재난컨트롤 타워 운영, 등 시설·안전분야 기능 강화로 전년대비 안전 사고가 크게 줄었으며(38건→28건), 전문기관 인증 평가를 통해 부천 체육관에 대한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분야 성과가 우수함.

## 미흡한 점

- ‘문화데이트’등 노사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으나, 실질적인 노사협력을 위한 활동 실적이 다소 부족한 편임.
- 블라인드 채용 도입, 임금피크제 운영 등 대체적으로 공기업정책을 준수하고 있으나, 성과공유제 미도입 등 일부 미준수사항이 발생하여, 전년대비 평가가 저조한 편으로 향후 정책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필요.
- 공사의 2018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84.7점으로 지방공기업 전체 점수(80.5점)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, 전년대비 1.5점 하락(86.2점→84.7점) 하였으며, 하락요인으로 서비스 과정 차원의 접근성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.

## V 세부평가결과

### I. 평가기준 및 항목 : 6개분야

- 평가분야 지정

평가분야	배점	평가자
총계	100점	
①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	20점	재정심사팀장 고재경
② 고객만족 증진	15점	재정심사팀장 고재경
③ 공사운영의 활성화	30점	행정7급 전용호
④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	10점	행정7급 전용호
⑤ 시 정책 준수	20점	행정7급 전용호
⑥ 경영수지 개선	5점	행정7급 전용호

※ 별첨 :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결과내역

## II. 항목별 세부 평점결과 : 90.3점

경 영 목 표	평가기준	목표치	이행실적	배점	득점
계				100	90.3
1. 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 (20점)	1-1.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공익성 확보	31회 이상	45회	10	10
	1-2.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문제해결	97% 이상	99.8%	10	10
2. 고객만족 증진 (15점)	2. 고객평가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	전년대비 5%이상 증가	89.5%	15	13.4
3. 공단운영활성화 (30점)	3-1. 시설관리의 안전성 제고	전년대비 10%미만 감소	10건 ↓	10	10
	3-2. 체육분야 이용자수 증가율	전년대비 10% 이상(이용객수)	125,259명 ↑	10	8.9
	3-3. 신규(개발)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추진 노력도	탁월	우수	10	9
4.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(10점)	4. 노사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적	20회 이상	15회	10	6
5. 시 정책 준수 (20점)	5. 시 정책 준수	97%이상	94.4%	20	18
6. 경영수지 개선 (5점)	6. 대행사업 운영성과율	전년대비 10% 이상 증가율	9.98%	5	5

## VI 평가결과 조치

○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사장 평가급 지급률 반영

※ 2019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(2018년도 실적) 결과 : “나” 등급

붙임 1. 관련규정 1부.

2. 항목별 세부 평가결과 내역 1부(별도첨부). 끝.

## [붙임 1]

### 관련규정

### 【지방공기업법】

####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 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### 관련규정

### 【경영성과계약서】

#### 제 8 조(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)

- ①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(이하 “목표이행실적평가”라 한다)는 시장이 행한다.
- ② 제1항의 목표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배점 및 평가기준, 목표치와 기준치는 【별표 3~4】 와 같다.
- ③ 목표이행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점수를 부여하며, 그 기준은 【별표 5】 와 같다.

#### 제 9 조(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)

- ① 사장의 경영성과(“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”를 말하며, 이하 같다)는 평가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.
- ②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【별표6】 및 【별표 7】 과 같다.
- ③ 평가대상 사업년도 중에 2인 이상의 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,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사장에 한하여 적용한다.

